

4. 지원자격

전형구분	전형유형	모집단위	지원자격	
내 원 정	일반 전형	전체학과	·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	
	일반고	간호학과 치위생과(주)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	· 일반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구 종합고등학교 인문과(일반과정, 인문 사회과정, 자연과정, 보충 과정) 졸업(예정)자 ·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 졸업(예정)자 · 자율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· 검정고시(고졸학력)합격자 ※ 일반고 중 직업과정이수(예정)자 및 대안학교 졸업(예정)자 지원 가능	
		특성화고	간호학과 치위생과(주)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	· 특성화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구 종합고등학교 실업계(전문과정) 졸업(예정)자 ·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고, 체육고, 마이스터고 졸업(예정)자 ·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중 전문계열 교육과정 이수자
	협약을 통한 연계교육	간호학과 보건행정과 식품영양과 호텔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방송콘텐츠과 패션디자인과	· 본 대학과 연계교육 협약이 체결된 특성화(전문)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(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) ※ 연계교육과정 고교명 : 매항여자정보고등학교, 안양문화고등학교,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, 삼일고등학교,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	
	특별 전형	고른기회1	· 호텔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미용예술과 (메이커업미용전공 피부미용전공/ 헤어미용전공)	·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- 국가보훈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(지)정정이 발급하는 「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증명서」 제출가능자 - 농어촌학생 - 기초생활수급권자, 자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-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※ 보호조치 종료 및 시설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※ 농어촌학생, 기초생활수급권자, 자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: 정원의 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함
	경력자	지위생과(아) 반려동물과	· 치과병원, 치과의원 재직경력 2년 이상인 자 ·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	
		성인학습자	의료재활과 사회복지상담과 라이프케어과 파프골프경영과	· 만21세이상 출생자(수시1차 : 2005.09.30.이전 / 수시2차 : 2005.11.25. 이전) 중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외 원 정	기회 균형 선발	농어촌 학생	전체학과 I. 유형 : 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+부모) 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II. 유형 : 초중(6년)+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본인) 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	
		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자상위 계층	전체학과	· 공통사항 - 농·어촌 지역 :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- 도서벽지 지역 :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 - 학교 재학 중 읍·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당해지역 농·어촌 인정 - 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계고) 및 검정고시 제외 ※ 본 대학에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(I유형은 부모 포함)가 최종 고교졸업일까지 해당지역에 재학(이수) 및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합격(입학)이 취소됨
	전문대학 이상 졸업자	전체학과	·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자상위계층 중 자상위 복지 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 돌봄 자상위 가구의 학생 ※ 수급 가구의 학생 → 주민등록표등본 內 같은 세대 구성원 ※ 자상위 복지 급여 수급 해당 가구 : 자상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, 자상위 장애 수당, 자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자상위 자활 급여, 한부모 가정 지원 ·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· 기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-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 -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 - 학점은행제 80학점 이상 취득자(학사학위과정에 한함) ※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불가	

※ 8호(전학), 9호(퇴학처분) 지원불가(학교폭력 8호, 9호 해당자가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되고 남부만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음)

※ 검정고시 출신자,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은 학교폭력 조사사항 반영하지 않음